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商標取消

<大法院 第3部 判決>(1985. 4. 9)

事件番號 : 85후 1

裁判長 : 강 우 영

關與法官 : 윤 일 영 · 김 덕 주 · 오 성 환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남 기 탁(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183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 : 박 삼 식(부산시 남구 광안동 1274-1)
3. 原審決 : 特許廳 1984. 11. 29日, 1982年 抗告審判(當) 第149, 150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5. 理 由 : 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(1)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의 조용돈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조용돈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 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“정당한 이유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.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(2)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(상표법 제45조제3항)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

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.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.

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◎ 심 결 ◎

항고심판청구인(심판청구인) 남기탁 (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연지동 183)
 피항고심판청구인(피심판청구인) 박삼식 (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1274-1)

위 당사자간의 1981년 심판 제528호, 529호, 530호, 531호 및 632호(등록제71970호, 71971호, 71972호, 71987호 및 71978호 상표의 취소심판)의 심결불복 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병합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결한다.

◎ 주 문 ◎

각 원심결을 파기한다.
 등록 제71970호, 71971호, 71972호, 71987호 및 71978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.
 각 심판 및 항고심판비용은 피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 ☞